

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10.12.15., 2014.7.28, 2015.5.8, 2015.12.31, 2016.7.13>

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					접수번호	
신청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(0) -	해당시·군·구		년 월 일	
		집전화 () -	전입일			
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						
신청순위	1순위	☐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☐ 한부모가족, 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(월평균소득 70%이하)		2순위	☐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(월평균소득 100%이하)	
주택 및 자산현황	☐ 무주택		☐ 자산 및 자동차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)		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. 3.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		
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인)						
시장(군수·구청장) 귀하						
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(갭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			
☐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(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						
평가항목		평가요소		배점	평가	평점
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·창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		가. 24개월 이상		3점	()월	()점
		나.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	2점		
		다. 12개월 미만		1점		
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(특별시장·광역시 포함)·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		가. 5년 이상		3점	()년	()점
		나. 3년 이상 5년 미만		2점		
		다. 3년 미만		1점		
③ 부양가족의 수 (신청인 제외)		가. 3인 이상		3점	()인	()점
		나. 2인		2점		
		다. 1인		1점		
* 별도가점		- 3자녀 이상(민법상 미성년자)		1점	- 3자녀()	()점
		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(세대원에 한함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		1점	- 부양()	()점
		- 중증장애인(신청인 포함)		1점	- 장애인()	()점
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명의로 통장만 인정)		가. 24회 이상 납입		3점	()회	()점
		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		2점		
		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		1점		
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·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)		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화장실 중			- 전용입식부엌()	()점
		가.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		2점	- 전용수세식	
		나. 하나만 구비한 주택		1점	화장실()	
⑥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(1순위 입주자 선정 시) *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,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)		가. 80% 이상		5점	()%	()점
		나. 65% 이상 80%미만		4점		
		다. 50% 이상 65%미만		3점		
		라. 30% 이상 50%미만		2점		
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						
총점		점		소속	확인자	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